#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문복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73

발의연월일: 2017. 2.

발 의 자: 문복란의원

찬 성 자: 김해선의원, 남연회의원

은복실의원, 이상철의원(4명)

###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성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뜻을 기리고,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기부 및 기부자에 대한 정의 및 구청장 책무 명시(안 제2조 및 제3조)
  - 구민의 자발적인 기부문화 조성과 지원을 위해 노력
- 나. 기부문화 시책 수립시행 규정(안 제4조)
- 다. 기부자 명부관리와 예우 및 지원에 대해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 기부자 명단 작성, 명예의 전당 설치, 성동구 주요행사 초청, 표창·감사장 수여 등
- 라. 위원회 구성, 기능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 임기 등 규정 (안 제7조~제10조)
- 마. 위원회 회의 및 수당 등에 대해 규정(안 제11조 및 제12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사회보장기본법」제27조
- 나. 예산조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행 시 관련 예산편성
- 다. 입법예고(2017. 2. 7. ~ 2.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 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구민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제4조(기부문화 시책)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 의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 1. 기부문화 관련 구민 참여
  -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 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 4. 기부자 예우 및 지원
  - 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 받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1. 특정 장소 또는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공개
-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 3.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구보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 4. 구청장 표창·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 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2명 이내의 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 2.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
  - 3.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문화활성화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2.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 3.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

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2. 2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발의자: 2017. 2. 3. / 문복란 의원
- 나. 회부일자: 2017. 2. 17.
- 다. 상정일자: 2017. 2. 24.(제230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 2.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성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그 뜻을 기리고,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 성하여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기부 및 기부자에 대한 정의 및 구청장 책무 명시 (안 제2조 및 제3조)
  - 구민의 자발적인 기부문화 조성과 지원을 위해 노력
- 나. 기부문화 시책 수립시행 규정(안 제4조)
- 다. 기부자 명부관리와 예우 및 지원에 대해 규정 (안 제5조 및 제6조)
  - 기부자 명단 작성, 명예의 전당 설치, 성동구 주요행사 초청, 표창·감사장 수여 등
- 라. 위원회 구성, 기능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 임기 등 규정 (안 제7조 ~ 제10조)

마. 위원회 회의 및 수당 등에 대해 규정(안 제11조 및 제12조)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사회보장기본법」제27조
- 나. 예산조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행 시 관련 예산편성
- 다. 입법예고(2017. 2. 7. ~ 2.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성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 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뜻을 기리고,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 제2조에서는
-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 안 제3조 ~ 제4조에서는
- 구청장의 책무와 기부문화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음.
- 안 제5조 ~ 제6조에서는
- 기부자 명부관리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 안 제7조 ~ 제9조에서는
-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 ~ 제12조에서는
- 위원의 임기,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음.

-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으로 기부문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가 확산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부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 따라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제도 마련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 의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구민의 기부문화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조례의 실 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부자의 자긍심을 높여줄 다양한 예우 및 지원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임.
- 6.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조.
- 7. 토론요지: 없음.
- 8. 심사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